

부 재 선 고 심 판 청 구

청 구 인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등록기준지:

주소 :

전화: 000 - 0000

사건본인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(주민등록번호)

(잔류자) 원등록기준지:

등록기준지:

최후주소:

전화: 000 - 0000

청 구 취 지

잔류자 △△△에 대한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부(父)로서 현재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.
- 2. 사건본인은 상기주소에서 8·15 해방이후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에「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주」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
- 3.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자 본 청구를 합니다.



첨 부 서 류

1.	가족관계증명서	1통
1.	기본증명서(사건본인)	1통
1.	잔류자확인서	1통
1.	주민등록등본	1통
1.	인우보증서	1통
1.	인우인주민등록등본	1통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위 청구인 ㅇ ㅇ ㅇ 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제출법원	잔류자의 등록기준지가정법원				
청구권자	· 가족 · 검사(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)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		
불복절차	·즉시항고(동법 제9조, 가사소송법 제43조, 가사소송규칙 제57조)				
및 기간	간 ·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(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)				
비 용	· 인지액 : 면제(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) · 송달료 : 당사자수 ×3,700원(우편료) ×4회분				
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 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자를 말함.(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)					

[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주요 조문]

제3조 (부재선고)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09.12.29>

제4조 (부재선고의 효과)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 이경우 「민법」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전문개정 2009.12.29>

제5조 (부재선고의 취소)

-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,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(善意)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1.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
- 2.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
- 3.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
-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.

<전문개정 2009.12.29>